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1
----------	------

제출년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결과 채택된 개선내용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 신설함(안 제2조 및 제4조).
- 나.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 다.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폐지 법률 제9008호 2008.3.28)되면서, 「농어촌정비법」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함(안 제11조).
- 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 마. 「임대주택법」(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임대기간 내 폐각 등으로 추정할 경우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12조).
- 바. 도 지역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함(안 제12조).
- 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조문 수정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 아.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함(안 제19조).
- 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제7558호, 2005.5.31)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함(안 제21조).
- 차.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 23조).

개정 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9008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세법」 제180조
- 「주택법」 제2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8. 11. 03 ~ 2008. 11. 13(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2008. 10. 10)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계 존·비속”을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감면신청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직계 존·비속”을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로 하여 제13조제1항을 제13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본문 중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안상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서근식
	담당자 성명·전화	신운호 (행정 2198)

현 행	개 정 안
<p>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3조의 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p>

현 행	개 정 안
	<p>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2. (생략)</p>	<p>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주택----- ----- ----- 1.~2.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 ----- ----- ----- ----- -----</p>
<p>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3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 중 참고업용----- ----- ----- -----</p>